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3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12. 18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대상 사업 등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지키고자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하고, 표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공모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수정함 (안 제14조)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 제목 “심의위원”을 “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문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(이하 “공모사업”이라 한다.),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.
- 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 이사가 정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4조 (심의위원)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, 그 밖에 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4조 (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		<p>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(이하 “공모사업”이라 한다.),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다.</p>
	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</p>

	<u><신 설></u>	<u>없다.</u> <u>③ 위원 위촉 방법 등</u> <u>위원회 구성 및 운영</u> <u>에 관하여 필요한</u> <u>사항은 대표이사가</u> <u>정한다.</u>
<u>제14조</u> ~ <u>제18조</u> (생 약)	<u>제15조</u> ~ <u>제19조</u> (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 지와 같음)	<u>제15조</u> ~ <u>제19조</u> (개정 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 (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(이하 “공모사업”이라 한다.),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.

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 이사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4조 (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(이하 “공모사업”이라 한다.),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.</u></p>
<u>제14조 ~ 제18조 (생략)</u>	<u>제15조 ~ 제19조 (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</u>